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45

발의연월일: 2025. 3. 4.

발 의 자:윤상현ㆍ이헌승ㆍ인요한

김선교 • 주호영 • 신성범

조배숙 • 박충권 • 임이자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교육청은 규칙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적으로 하여도 이를 제재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에도 학교나 교육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를 심의하여할 질환교 원심의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복직 등을 심사하게 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으로부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함(안 제45조의2 신설).

가. 학교의 장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을 업무에서 지체 없이 배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교원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복수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 등 소속으로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 등이 정신상의 장애 등과 관련한 휴직·복직·퇴직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질환교원심의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을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서 지체 없이 배제하고, 학생에게서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원의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복수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5조의2(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따른 휴직·복직·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

우

- 2.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을 하려는 경우
- 3. 제4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을 요청한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교원이 복직하려는 경우 휴직의 원인이 된장애 또는 질환과 관련한 복수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중인 교원의 복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교원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휴직) ① (생 략)	제44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
	는 교원을 교육과 관련된 업무
	에서 지체 없이 배제하고, 학생
	에게서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
	에게 해당 교원의 휴직을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정신상의 장
	애가 있는 교원이 교육과 관련
	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복수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u>아니하다.</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45조의2(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신상의 장애 또
	는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
	행 가능 여부에 따른 휴직 · 복
	직 · 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소
	<u>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u> 첫 "사이이의회"과 하다)로 드
	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 2.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휴직한 교원이 복직을 하려는 경우
- 3. 제4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을 요청한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교원이 복직하려는 경우 휴직의 원인 이 된 장애 또는 질환과 관련 한 복수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 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